#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( 제정) 2009.05.26 조례 제1843호

(일부개정) 2011.07.20 조례 제192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(전부개정) 2015.12.03 조례 제2220호 다문화가족지원법, 제12조 및 제16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제12조, 제12조의2,「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」제3조 및 제4조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함양군 내 거주자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 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 - 가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, 제3조,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
- 나.「국적법」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, 제3조,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
- 2. "결혼이민자 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.
 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  - 나. 「국적법」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

제3조(군수의 책무) 함양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함양군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 등) ① 군수는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

- 제5조(다문화가족 지원 사업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 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, 직업·훈련 사업
  - 2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
  - 3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사업
  - 4.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·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
  - 5. 결혼이민자(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)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친정어머니 맺어 주기, 모국 방문 및 해외 가족 초청 사업
  - 6.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우리말 대회 사업
  - 7.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및 문화·체육 행사 사업
  - 8.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 육 및 산전·산후 도우미 사업,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
  - 9.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 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친 사업
  -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·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

다.

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,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「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 제3장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

- 제6조(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⑤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, 행정과장, 보건소장, 농축산과장으로 한다.
  -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다만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1. 함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
  - 2. 함양경찰서와 함양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  - 3.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
  - 4.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
  - 5. 결혼 이민자 당사자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  - 6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
  - ⑦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  - ⑧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고,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.

#### 제7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· 조정한다.

- 1. 제5조의 지원 사업
- 2.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## 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

-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**제10조(회의)**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수당)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## 제4장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-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군수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2조에 따라 함양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 실시
  - 2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
  - 3.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
  - 4.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 서비스 연계
  - 5.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알선
  - 6.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·번역 지원 사업
  - 7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제13조(위탁)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제12조의2에 따라 법인 이나 단체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수탁기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 - ③ 지원센터의 위탁·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  -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
  - ⑤ 위탁기간 중 관계 법령의 제·개정 등으로 조정·변경·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.
  - ⑥ 군수는 위탁·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거 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  -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  - 2.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
  - 3. 위탁받은 법인·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
  - 4.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
  - 5. 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⑨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관계 법령과 「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4조(지방보조금의 지원)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 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,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「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# 제5장 보칙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<전부개정 2015. 12. 3. 제222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,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